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5855 담배소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가운데 1,178,578,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2.부터 2012. 7. 20.까지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7. 12. 피고에게 위 담배소비세 등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6. ① 원고가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중 2010. 7. 12.부터 2010. 12. 6.까지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경정청구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된 2011.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②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1. 1. 17. 이후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2011. 6. 7. 112,424,400원, 2011. 6. 24. 10,787,400원, 2011. 7. 13. 39,746,400원을 각 환급(환급합계액 162,958,200원)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 가운데 1,178,578,510원을 초과하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원고로부터 신고·납부받은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41,536,710원 중 162,958,200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1,178,578,510원(=1,341,536,710원 - 162,958,200원)을 초과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이를 증기상태로 기화시켜 흡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장치가 결합된 제품을 말하는데, 원고가 수입한 것은 니코틴 용액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고, 설혹 위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니코틴 용액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시행되던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구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47조는 담배소비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호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과 이를 기화시키기 위한 전자장치는 별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효용이 없이 니코틴 용액을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니코틴 용액이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니코틴 용액을 위와 같은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오래전부터 연초의 잎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담배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을 가공,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니코틴 용액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흡입'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니코틴을 기화 방식으로 체내에 흡수하기 위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 역시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니코틴을 기화 방식으로 흡입하여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 용액 역시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지방세법 등이 전자담배 역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여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용액은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 가운데 1,178,578,510원을 초과하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판사 김선아

판사 조 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별지 1

담배소비세 등 신고·납부내역

⑦세목	⑧납 부 연월일	⑨과세 번호	⑩실제 납부세액	⑪정상	⑫
			(1)	(2)	(3)=(1)-(2)
니코틴 용액	2010-07-12		1,320,000		1,320,000
니코틴 용액	2010-07-12		1,320,000		1,320,000
니코틴 용액	2010-07-12		2,640,000		2,640,000
니코틴 용액	2010-08-18		53,328		53,328
니코틴 용액	2010-08-18		9,000,000		9,000,000
니코틴 용액	2010-08-18		2,640,000		2,640,000
니코틴 용액	2010-08-18		1,980,000		1,980,000
니코틴 용액	2010-09-10		1,320,000		1,320,000
니코틴 용액	2012-09-29		7,920,000		7,920,000
니코틴 용액	2012-09-29		2,640		2,640
니코틴 용액	2010-10-18		16,038,000		16,038,000
니코틴 용액	2010-10-19		10,362,000		10,362,000
니코틴 용액	2010-10-22		1,260,000		1,260,000
니코틴 용액	2010-11-12		1,320,000		1,320,000
니코틴 용액	2010-11-29		9,900,000		9,900,000
니코틴 용액	2010-12-06		6,000,000		6,000,000
니코틴*용액	2011-01-17		275,928,000		275,928,000
니코틴 용액	2011-01-27		2,640		2,640
니코틴 용액	2011-02-16		136,274,400		136,274,400
니코틴 용액	2011-03-14		136,274,400		136,274,400
니코틴 용액	2011-03-22		30,000		30,000
니코틴 용액	2011-04-11		450,000		450,000
니코틴 용액	2011-04-18		56,780,400		56,780,400
니코틴 용액	2011-05-16		79,493,400		79,493,400
니코틴 용액	2011-05-23		147,630,600		147,630,600
니코틴 용액	2011-06-07		113,558,700		113,558,700
니코틴 용액	2011-06-24		72,677,400		72,677,400
니코틴 용액	2011-07-08		1,200,000		1,200,000
니코틴 용액	2011-07-12		62,458,800		62,458,800
니코틴 용액	2011-07-18		51,102,600		51,102,600
니코틴 용액	2011-09-14		72,106,800		72,106,800
니코틴 용액	2011-10-19		19,303,800		19,303,800
니코틴 용액	2011-12-05		11,355,000		11,355,000
니코틴 용액	2011-12-19		9,084		9,084
니코틴 용액	2012-01-05		11,355,000		11,355,000
니코틴 용액	2012-01-26		9,084,000		9,084,000
니코틴 용액	2012-02-16		27,252,000		27,252,000
니코틴 용액	2012-03-16		12,490,500		12,490,500
니코틴 용액	2012-04-10		1,816,800		1,816,800
니코틴 용액	2012-04-30		7,721,400		7,721,400
니코틴 용액	2012-05-31		6,813,000		6,813,000
니코틴 용액	2012-06-15		7,040,100		7,040,100
니코틴 용액	2012-07-03		7,948,500		7,948,500
니코틴 용액	2012-07-19		2,271,000		2,271,000
니코틴 용액	2012-07-19		7,262,400		7,262,400
니코틴 용액	2012-07-20		3,846,000		3,846,000
합계			1,414,612,692		1,414,612,69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별지 2 2011. 1. 17부터 2012. 7. 20.까지 담배소비세 등 신고·납부내역 및 환급 내역

발급번호	예치금예치일	니코틴용량	세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세액(원)	비고
2011-1	2011-1-17	459,880	400	183,952,000	91,976,000		275,928,000	
2011-3	2011-1-27	4	400	1,760	880		2,640	
2011-4	2011-2-16	227,124	400	90,849,600	45,424,800		136,274,400	
2011-6	2011-3-15	227,124	400	90,849,600	45,424,800		136,274,400	
2011-7	2011-3-22	50	400	20,000	10,000		30,000	
2011-8	2011-4-11	750	400	300,000	150,000		450,000	
2011-10	2011-4-18	94,634	400	37,853,600	18,926,800		56,780,400	
2011-12	2011-5-16	132,489	400	52,995,600	26,497,800		79,493,400	
2011-13	2011-5-23	246,051	400	98,420,400	49,210,200		147,630,600	
2011-15	2011-6-7	189,265	400	75,705,800	37,852,900		113,558,700	
2011-18	2011-6-24	121,129	400	48,451,600	24,225,800		72,677,400	
2011-18	2011-6-24	-17,979	400	-7,191,600	-3,595,800		-10,787,400	환급
2011-19	2011-7-13	2,000	400	800,000	400,000		1,200,000	
2011-20	2011-7-13	104,098	400	41,639,200	20,819,600		62,458,800	
2011-21	2011-7-18	85,171	400	34,068,400	17,034,200		51,102,600	
2011-26	2011-9-14	120,178	400	48,071,200	24,035,600		72,106,800	
2011-30	2011-10-20	32,173	400	12,869,200	6,434,600		19,303,800	
2011-33	2011-12-5	18,925	400	7,570,000	3,785,000		11,355,000	
2011-34	2011-12-19	15	400	6,050	3,020		9,070	
2011-15	2011-6-7	-187,374	400	-74,949,600	-37,474,800		-112,424,400	환급
2011-20	2011-7-13	-66,244	400	-26,497,600	-13,248,800		-39,746,400	환급
2012-1	2012-1-5	18,925	400	7,570,000	3,785,000		11,355,000	
2012-2	2012-1-26	15,140	400	6,056,000	3,028,000		9,084,000	
2012-4	2012-2-16	45,420	400	18,168,000	9,084,000		27,252,000	
2012-5	2012-3-16	20,818	400	8,327,000	4,163,500		12,490,500	
2012-6	2012-4-10	3,028	400	1,211,200	605,600		1,816,800	
2012-7	2012-4-30	12,869	400	5,147,600	2,573,800		7,721,400	
2012-9	2012-5-31	11,355	400	4,542,000	2,271,000		6,813,000	
2012-11	2012-6-15	11,734	400	4,693,400	2,346,700		7,040,100	
2012-12	2012-7-3	13,248	400	5,299,000	2,649,500		7,948,500	
2012-13	2012-7-19	3,785	400	1,514,000	757,000		2,271,000	
2012-14	2012-7-19	12,104	400	4,841,600	2,420,800		7,262,400	
2012-15	2012-7-20	6,410	400	2,564,000	1,282,000		3,846,000	
				785,719,010	392,859,500		1,178,578,510	